

동반성장론 B2B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율 기준표

거래금액(결제금액)	정액수수료	정률수수료
일백만원 이하	1,000 원	0.2%(최저수수료 500 원)
일천만원 이하	3,000 원	0.05%(최저수수료 2,000 원)
오천만원 이하	7,000 원	0.02%(최저수수료 5,000 원)
일억원 이하	12,000 원	0.015%(최저수수료 10,000 원)
일억원 초과	20,000 원	20,000 원

※ B2B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 기준표는 위와 같으나, 실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은행과 MP 사간의 사전 협약에 의해 결정되므로 MP 사별로 다를 수 있으며, 상생매출채권 거래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거래하는 MP 사에 문의하거나 MP 사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의사항

1. 동반성장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상생매출채권 수취시 다음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- ▶ B2B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 : 동반성장론 B2B 서비스 이용에 따라 은행이 받는 수수료
 - ▶ MP 수수료 : 동반성장론 시스템 운영사인 MP 사가 받는 수수료

2. 수수료부담주체
 - ▶ 동반성장론의 B2B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는 상생매출채권 수취기업(판매기업) 부담입니다.

3. 수수료 납부시기 및 방법
 - ▶ B2B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 : 전액 만기입금시에만 만기입금 금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며 상생매출채권 건별로 일부라도 대출을 받았거나 하위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.
 - ▶ MP 수수료 : 대출 취급시 마다 수수료금액을 차감하여 납부

4. MP 수수료는 고객과 MP 사 간에 기준을 정하여 부과하며, 은행은 징수대행업무만 수행하므로 수수료금액은 MP 사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반성장론 협력기업 이용약관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본 인 : _____ (인)W

주 소 :